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제안

### 목차

- I.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
- II.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 III. 정책 제언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치매노인 수는 2021년 89만2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4%
  - 65세 이상의 추정치매환자수는 2023년에 약 100만 명,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 ▶ 치매사고(치매노인의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와 그로 인한 피해 증가
  -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이 치매 증상으로 실종되고, 이 중 100명 넘게 배회하다 사망
  - 치매노인의 안전뿐 아니라 치매 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 일본 고베시는 2019년부터 치매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시행
  - 치매사고 시 ① 배상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위문금(급부금)과 ② 치매로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에 지급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2층 구조로 운영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구상

- ▶ 우리나라도 향후 치매인구의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일본 고베시 사례와 유사한 제3자 피해자구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 제도 시행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가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 검토
- ▶ 시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2) 민간 보험사를 활용한 집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음
  -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 정책 제언

- ▶ 제3자 피해자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 ▶ 제도구상 단계에서 정교한 예산 추계 선행



# I.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

## 치매노인의 증가와 함께 치매인 관련 사건 사고도 증가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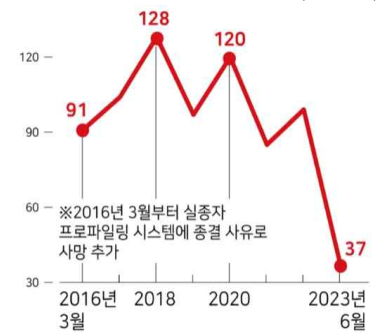
- ▶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약 858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16.7%를 차지
  -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됨
- ▶ 치매노인 수는 2021년 89만2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4%<sup>1)</sup>
  - 전국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수는 2017년 약 71만 명, 2019년 약 79만 명, 2021년 89만 명으로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여 치매노인 인구수의 증가율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인구수의 증가율보다 더 빠름
  - 추정치매환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추정치매환자수는 2023년에 약 100만 명,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의 치매 환자 관련 사건 사고도 증가 추세

- ▶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지적능력이 저하되는 복합적 장애를 유발
  - 기억력과 판단력, 지남력과 같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연습과 학습, 문제해결, 사고,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결손이 진행
  - 병증이 진행될수록 자기간호능력이 저하되어 신체적, 환경적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여러 사고에 노출<sup>2)</sup>
- ▶ 경찰청의 실종 치매환자 사망 현황(2016년 3월~2023년 6월)을 보면 지난 7년간 761명이 배회하다가 사망<sup>3)</sup>

- 서울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자유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치매노인이 차량 여러 대에 치여 숨진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블랙박스 제보로 올라오면서 크게 사건화되기도 함<sup>4)</sup>
- 밤에 낯선 도로 해마다 교통사고 당하거나, 요양시설을 탈출하려다 넘어지고 사망하는 사건 등이 다수 발생

〈그림 1〉 치매 실종자 중 사망 추이 (단위: 건)



### ▶ 우리나라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실종

-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이 치매 증상으로 실종되고, 배회하다 숨지는 경우도 1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종자 가운데 1%는 숨진 후 발견되는 셈

1)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2) 이행운-엄진삼-최미현-이수정-최진승-문석우-탁계래-정순철(2009). "사고사례를 통한 재가치매환자의 위험요소 추출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2(1), p.11-18.

3) 한국일보(2023). "치매 환자의 위험한 '배회'... 한해 100명 넘게 숨진다". 2023.09.20.

4) 국민일보(2023). "자유로 뛰어든 치매노인 뺑소니 참극...마네킹 아니었다". 2023.06.09.

# I.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

## 치매 노인에 의한 사건사고는 고령화가 빠른 일본에서도 주요한 이슈

▶ 치매노인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시간이나 장소를 깜빡하는 등의 증상, 판단력 저하, 신체 기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가정 내외에서 사고 발생확률이 높음

▶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매 노인 사고는 아래와 같음

- ①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 ② 음식이외의 것을 먹는 사고(예 : 세제나 살충제 등을 먹음)
- ③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목이 막히는 사고
- ④ 길을 배회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고
- ⑤ 가스 불을 켜 상태로 잊어버리는 사고(가스 누수)
- ⑥ 가족과의 갈등 및 물건의 분실 사고

▶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에 의한 사고 사례는 교통사고가 많음

- 치매 노인이 운전을 하면서 대인 혹은 대물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나 길을 배회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임

- 대인 혹은 대물 사고의 경우, 치매 노인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음
- 그 외에도 운전 도중에 한순간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미아운전을 하거나,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일정한 속도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핸들 조작이 미숙해지는 경우가 있음
-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 배회로 인해 행방불명된 치매 노인의 수는 1만 8천 명 이상이며, 행방불명된 지 5일이 경과할 경우 생존율은 0%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주요 사고사례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나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타인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 치매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도 발생 가능

- 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자택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전거에 손상을 입힘
- ②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두를 가지고 가서 더럽힘
- ③ 음식점(법인)에서 식사 중에 좌석을 더럽힘
- ④ 수도 누수를 발생시켜 아래층의 천장이나 벽지에 손상을 입힘

▶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매 고령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책임 하에 문제가 해결되지만, 가정 밖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선정이나 배상책임 문제 등이 발생

- 일본의 경우, 민법에 의해 치매 노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가족 등 치매 노인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의무자가 대신해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발생한 JR동해 사고사례에 대한 재판 판결 내용에서는 가족이라고 반드시 감독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의 접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독의무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

# I. 필요성 및 국내·외사례

JR동해 사고는, 2007년 12월 7일에 당시 91세인 치매 노인이 JR동해역 구내 선로에 걸어 들어가 열차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임. 이와 관련하여 JR동해 측은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19만 7740엔(약 7천만원)을 치매 노인의 배우자 및 장남에게 청구한 사례임. 1심과 2심에서는 가족에게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최고재판소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85세에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장남은 2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치매 노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가족이 감독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만약 감독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치매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음

## 시민안전보험 :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들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sup>5)</sup>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

- 보험 운영 주체별로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며,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보험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피보험자는 해당 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피보험자가 됨
-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12.기준)<sup>6)</sup>

〈표 1〉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입 시·군·구 수	36	116	196	209	237

※ 미가입(6) :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군위군('23년 가입 예정), 용인시, 당진시

-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표준 37개 보장항목에 대한 사망·후유장애, 부상 치료비 등 보상

〈표 2〉 시민안전보험의 표준 보장 항목

구분	내 용	비 고
보장 항목 (37개)	①자연재난 사망 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③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애 ④화상진단 위로금 ⑤유독성 물질 사망 ⑥가스사고 사망 후유장애 ⑦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⑧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⑨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⑩스쿨존 사고 ⑪실버존 사고 ⑫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애	지자체별 차이 존재

5)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1.5.). 시민안전보험'사회재단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시민안전' 보험제도

# I.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

구분	내 용	비 고
	⑬물놀이 사망 ⑭선박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⑮의사 ⑯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⑰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⑱강력·폭력범죄 위로금 ⑲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⑳미아찾기 정액지원금 ㉑유과·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㉒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㉓헌혈 후유증 보상금 ㉔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㉕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㉖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㉗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㉘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㉙감염병 사망 위로금 ㉚아나필락시스 진단비 ㉛의료사고 법률지원 ㉜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㉝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㉞포괄적 상해 의료비 ㉟개 물림 진료비 ㊱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㊲사회재난 사망('23년 신설)	지자체별 차이 존재
보상 한도	최소 5 ~ 최대 50백만원	

- 지급건수 : ('19년) 242건 → ('20년) 2,377건 → ('21년) 3,576건
- 보험금 : ('19년) 1,806백만원 → ('20년) 8,455백만원 → ('21년) 11,627백만원
-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19년) 20% → ('20년) 54% → ('21년) 57%

일본 고베모델,  
 '치매 사고 구제' :  
 치매로 진단된 시민을  
 대상으로 고베시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일본 지자체의 치매 노인에 친화적 지역 만들기 : 치매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사고 구제 제도」 시행

- ▶ 치매 노인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짐
  -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고베시는 2019년에 치매에 관한 「고베 모델」을 구축하여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진단 조성 제도」와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사고 구제 제도」를 시행
  - 「고베 모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로써 재원은 초과 과세의 도입을 통해 시민이 부담(1인당 연간 400엔)
  - 「사고 구제 제도」는 치매로 진단된 시민을 대상으로 ① 배상책임보험에 고베시가 가입하고, ②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고베시에 24시간 365일 상담가능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③ 소재지를 모를 때를 대비하여 출동 서비스를 포함한 GPS 도입 비용의 부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④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를 맞이한 모든 시민에게 위문금(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
  - 치매인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지급에 대해서는 ① 배상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위문금(급부금)과 ② 치매로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에 지급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2층구조
  - 위문금(급부금)제도의 경우, 피해자가 고베 시민인 경우, 사망(최고 3천만엔), 후유장해(최고 3천만엔), 입원(최고 10만엔), 통원(최고 5만엔), 재물손괴(최고 10만엔), 휴업손해(최고 5만엔)에 따라 각각 최고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가 고베 시민이 아닌 경우, 위문금만 최고 10만엔의 한도안에서 지급
  - 배상책임보험제도의 경우, 치매 진단후 사전등록이 필요, 최고 2억엔까지 지급

# I. 필요성 및 국내·외사례

일본 고베모델은 치매 관련 지자체 독자적인 제도

## 일본 고베 모델의 시사점 : 사회보장영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고베시가 2019년 처음으로 독자적인 제도로 창설

- ▶ 고베 모델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치매인이 일으킨 사고 피해자의 구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일본 정부가 사고구제제도의 전국적인 도입을 연기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좋은 교훈이 됨과 동시에, 관련 제도가 확산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로 고베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政令指定都市) 중에서는 요코하마시와 나고야시가 2020년 1월부터 관련 제도의 운영을 개시하였음

〈그림 2〉 ‘치매 고베모델’의 이미지



\*자료 : 고베프로젝트, 치매고베모델(WHO 고베센터). 번역

- ▶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18일에 「치매 정책 추진 종합 전략(신 오렌지 플랜)」의 후속 정책인 「치매 정책 추진 요강」을 책정
  - 요강의 내용 중에 「치매에 관한 다양한 민간보험의 추진」이란 항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치매 발생에 대비한 민간보험이나 치매 환자 및 그 감독 의무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민간의 손해보상책임보험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각 보험 회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
    - 몇몇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조기진단의 촉진이나 행방불명 등의 수사 등과 더불어 치매 환자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시도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함
  - 주목할 점은 정부가 앞장서서 치매의 리스크에 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의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한다는 것임



**〈그림 3〉 고베시 ‘치매인에게 친근한 마을만들기’ 조례 포인트**

예방 및 조기 개입	치료 및 개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 고베 의료산업 도시,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에 의한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진단체제의 확립</li> <li>• 치매 조기 집중지원팀</li> <li>• 치매질환 의료센터 (고베시내 7개소에 설치)</li> </ul>
사고의 구제 및 예방	지역의 힘을 풍부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로 진단된 사람에 의한 사고의 구제제도를 창설</li> <li>• 치매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운전면허 자율반납을 추진</li> <li>• 이동수단의 확보 등, 지역에서의 생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참가의 장소를 정비</li> <li>• 중학교 구역별 단위로 치매 고령자 등에 말 걸기 훈련을 실시</li> <li>• 행방불명의 고령자를 조기 발견하는 사업을 실시</li> <li>• 시민 계발, 아동, 학생에 대한 교육 추진</li> </ul>

\*자료 : 고베시 복지국 개호보험과(2023).

▶ 우리나라도 치매인구의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일본 사례와 같은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7)</sup>

-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부터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가 손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하더라도 치매환자 간병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소진한 배우자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치매의 사회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하여 치매 환자가 배회나 요양 중에 화재, 손괴, 절도, 폭행, 상해 등 타인의 물적 및 인적 사고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및 상해사고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sup>8)</sup>
  - 혹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일시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고베 모델 및 일본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의 핵심은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 시켜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임

- 치매 환자의 불안 해소나 손해사고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사회 참가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에 대한 격리 혹은 배척보다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7) 이상우(2019).「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고령화리뷰 Monthly 제29호..보험연구원.

8) 상동

## II.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2유형 운영방안

일본의 「고베 모델」 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기도 치매인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서 가칭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을 구상

- ▶ 치매시민 안전보험제도(안)을 시행하는 운영주체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시행이지만, 현 시점에서 바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기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과 각 시군 단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베시는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구는 약 150만 명임. 경기도 인구가 약 1,352만 명이고,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 인구가 약 110만 명이므로, 수원시보다 약간 규모가 큰 시라고 볼 수 있음
    - 고베시의 경우, 고령자 인구 약 47만 명 중 치매 노인 수가 6만 명 이상으로 고베시 인구의 12.8%에 해당함
    - <표 4>과 같이 경기도의 경우, 노인 인구 약 170만 명 중 치매 노인은 17만 명(10.1%)이고, 수원시의 경우는 노인 인구 약 12만6천 명 중 치매 노인수는 1만2천 명(9.95%)정도임

〈표 4〉 치매 노인 인구의 비교

	고베시	경기도	수원시
총인구	150만 명	1,352만 명	110만 명
노인 인구	47만 명	1,689,436명	126,151명
치매 노인 인구	6만 명	170,974명	12,549명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12.8%	10.12%	9.95%

\*자료 : 경기도와 수원시의 인구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용(2023)

- 가입대상은 운영주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시행일 경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고, 시단위의 시행일 경우 시민이 가입대상이 됨
- ▶ **시행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와 충남 천안시의 사례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과 민간 보험사를 활용한 집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2022년 3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 환자에 의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시행하였음<sup>9)</sup>
    -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 안전사고 지원제도」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익산시 치매환자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임
    -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사건 발생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

9) 익산시 조례 제2074호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시행 2021.04.05]



## II.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 익산시에 이어, 2022년 5월에 천안시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시행<sup>10)</sup>하고 있는데, 가입 대상과 보상내용은 천안시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 보험사를 활용한 집단 보험의 가입 사례는 일본의 「고베 모델」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음
  - 「고베 모델」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의 위탁 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위탁 사업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①급부금제도의 운용을 위한 보험계약, ②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한 보험계약, ③GPS 안심출동 서비스의 운용을 위한 보험계약, ④사고구제제도의 운용지원 업무이고, 그 외에 전용 콜센터 업무, 급부금 지급에 관한 운용지원업무, 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용지원 업무 등이 있음
  - 경쟁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는 총 3사이며, 이중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보험사는 미츠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임
  - 사업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3년임. 채택된 입찰 금액은 43,105,044엔(원화로 약 3억 9천만원)임. 급부금제도 운용을 위한 보험계약은 2022년 1월말 시점의 고베시 인구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제의 계약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
  -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을 체결하는 보장제도로써 하나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복수의 보험사와 컨소시엄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 각 지자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자체의 인구수와 사고발생률, 그리고 보상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 도 운영에 관한 비용은 익산시와 천안시의 사례와 같이 치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지자체가 보유하는가 아니면 고베 모델이나 시민 안전보험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에 전가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익산시와 천안시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연간 보험료의 부담없이 발생한 사고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적은 운영 방법임
  - 다만, 사고 건수가 예산을 크게 초과하게 될 경우 예산 지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고베 모델과 시민안전보험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에 위탁할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규모가 예산상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을 추가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됨
  - 하지만 사고 건수가 예산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정한 비용으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0) 천안시 조례 제2355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2022.04.11.

## II.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2유형 운영방안 개요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2유형 운영방안 개요〉

	1유형	2유형	일본 고베모델
운영 주체	경기도	수원시	고베시
가입 대상	경기도민	수원시민	고베시민
총인구(고령자인구)	1,352만명(1,689,436명)	110만명(126,151명)	150만명(47만명)
치매인수(치매유병률)	170,974명(10.12%) - 치매+요양등급 약4천명 - 치매+요양2등급 약8천명	12,549명(9.95%) - 치매+요양등급 약100명 - 치매+요양2등급 약100명	6만명(12.8%)
집단보험 가입형태			
경기도 치매 시민안전보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집단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집단구성원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li> <li>- 개별구성원의 보험가입가능여부 확인등의 과정 불필요</li> <li>- 계약조건 등이 유리</li> <li>- 일반적으로 집단전체의 손해실적으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보험요율적용</li> </ul>		
시민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을 체결</li> <li>- 한곳의 보험사와 체결 또는 복수의 보험사와 컨소시엄의 형태 계약체결</li> <li>- 각 지자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자체의 인구수와 사고발생률, 보상항목에 따라 차이</li> <li>- 기존 수원시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치매 영역 추가</li> </ul>	
일본 고베모델 치매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경쟁입찰 선정</li> <li>- 위탁사업자 보험계약 주요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급부금제도운영</li> <li>2)배상책임보험제도운영</li> <li>3)GPS안심출동서비스운영</li> <li>4)사고구제제도운영 지원업무</li> </ol>               그외 업무             </li> </ul>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li>- 예산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집단보험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세 이상 시민에게 안내통지할 때 이미 치매 진행 또는 경증(MCI)의 경우</li> <li>- 고베시민과 타시민과 지급금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li> </ul>
기대효과 시사점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예방과 조기개입 홍보역할</li> <li>- 치료 및 돌봄제공 등 연계</li> <li>- 사고의 구제 및 예방</li> <li>- 지역의 힘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10월 기상관측이래 처음으로 수원시에 지진발생하면서 집단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li> <li>-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관심이 증대, 보험의 성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정책 추진 동기 발생</li> <li>- 시민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원시의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 도출하는 보험모형설계</li> </ul>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li> <li>- 치매인의 불안해소나 손해사고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사회 참가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li> </ul>

자료: 경기도와 수원시의 인구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인용(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2022),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오늘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요 예산 추계’ 선행

#### 제3차 피해자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을 시행하기 앞서 도민 혹은 시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치매 환자에 의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받거나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 2019년 시작된 일본 고베모델, 치매구제제도의 경우, 배상금은 고베시에 등록된 이가 대상이며 2021년 2월 말 현재 등록자는 6,021명(고베신문, 2021.7.5.)
  - 정밀검사로 치매 판정 경우는 약 70%, 폭넓은 구제를 위해 제도의 홍보 및 등록률 증가가 요구됨
  - 고베모델은 연간 약 3억엔의 예산으로 개인시민세(균등)로 1인당 400엔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지속적 노력
  - 배상금 지급의 사례는 창설 이래 11건, 금액은 약 130만엔
- ▶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의 시행 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3년간(2019~2021년) 납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449억 1078만원이었고, 이 중 64.4%에 해당하는 289억 2054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음
  - 실제 사고 건수가 예상 사고 건수보다 적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홍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제도구상 단계에서 보험료 예산 추계 선행

- ▶ 치매사고에 대한 데이터 축적, 파악 및 정교한 보험료 산정
  - 데이터가 불충분하면 보험료 산출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다소 높게 산출될 수도 있음
  - 가능한 정교한 보험료 산출을 통한 예산 추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나 사고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제도를 운영
  -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